

언론보도와 피해구제제도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제도의 효율적인 운용과 대 국민홍보를 목적으로 청주, 광주에 이어 제주에서 그 지역의 언론계학계·법조계·사회단체 등 각계 인사를 초청, 지방토론회를 개최하였다. 1993년 11월 5일 제주오리엔탈 호텔에서 열린 제주지방토론회에서는 한동원 위원(전 한국언론연구원 원장)의 「언론보도와 피해구제제도」라는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다음은 주제논문과 토론내용을 초록한 것이다.....편집자주

한 동 원

전한국언론연구원원장·중재위원

I. 머 리 말

언론인들이 그들 스스로의 규제규범으로 제정한 신문윤리강령 「자유」장에는 「신문의 자유는 인류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의 하나로서 끝까지 이를 옹호하여 민중의 알아야 할 권리에 부응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다. 한마디로 「국민의 알 권리」가 언론의 자유를 뒷받침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오늘날과 같이 다원화되고 전문화된 고도산업 사회에서 양산되는 다양한 정보를 국민들이 직접적인 경험보다는 대중매체에 대부분 의존해서 입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언론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고 신장되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국민의 알 권리」를 방패로 최대한 보장되고 있는 언론의 자유가 거꾸로 국민의 권리와 충돌하여 분쟁을 일으키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국민의 알 권리」는 「진실을 알 권리」이지 결코 「거짓을 알 권리」는 아닌 것이다. 그럼에도 언론은 「국민의, 진실을 알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거짓을 알리고 그 거짓이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빈도가 잦아지면서 언론에 대한 평가와 신뢰도가 크게 실추되어 있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언론보도에 의한 권익피해자는 날로 늘어만 가고 있으나 언론 측의 예방적인 대책이나 사후구제 태도는 미온적이거나 소극적이기만 하다. 자율규제기구인 신문윤리위원회는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언론중재위원회조차 기능이 약해 피해회복에 만족을 주지 못하고 있다. 사법부를 통한 구제는 피해자들이 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언론보도에 의한 피해구제제도의 개선 논의가 전에 없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II. 보도와 인권침해

보도에 의한 인권침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피해는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 침해로 1992년도 중재신청 381건 중 82.2%나 된다. 특히 근년에 와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미성년피의자와 성폭행 당한 부녀자의 신원공개 보도가 많아 적지 않은 재기불능

상태의 피해자들을 속출시키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매월 언론사에 시정을 권고하는 건수만도 보통 30 건을 넘어서고 있다.

보도에 의한 인권침해는 단순오보에서부터 과장보도, 선입견을 갖고 쓰는 보도, 추측보도, 남의 말만 듣고 확인 없이 쓰는 보도, 이해 당사자의 한쪽 말만 듣고 쓰는 편파보도, 상업주의를 앞세운 선정주의적인 보도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며 많은 경우 치명상을 입는다.

III. 정정보도청구와 언론중재

언론보도에 의해 피해를 받은 자는 1 차적으로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언론사에 대한 청구여부에 관계없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청구에 의한 분쟁의 중재를 신청 할 수 있다.

언론중재위원회 발족(1981 년 3 월 31 일) 이후 1993 년 9 월말까지 12 년 6 개월 동안 총 1,633 건의 중재신청이 있었다. 이 가운데 정정보도게재에 합의한 것이 419 건(25.7%), 불성립 414 건(25.4%), 취하 745 건(45.6%), 기각 40 건(2.5%), 각하 15 건(0.9%)으로 각각 처리되었다. 불성립된 414 건 중에서 57 건, 취하된 745 건 중에서 318 건, 기각 40 건 중에서 1 건이 중재위원회 밖에서 당사자간의 협의로 정정 또는 해명성 기사로 해결을 보아 실질적인 피해구제건수는 48.7%에 해당하는 795 건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중재신청인들의 반응은 전반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원인은 언론사측의 무성의와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이 약하다는 데 모아지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가 1989 년에 실시한 중재신청인 의견조사에 의하면 합의사항에 대한 만족도 질문에서 73.9%가 불만족이라고 응답했으며 만족은 26.1%에 불과했다.

합의 결과 피해회복에 대한 평가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76.2%, 긍정적인 반응은 23.8%에 불과했다.

또한 언론사의 호의적인 보도약속을 믿고 취하했으나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86.1%로 나타나 언론사와는 약속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IV. 효율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제언

1. 예방적 차원에서 언론사들이 해주었으면 하는 일들

(1) 익명보도원칙을 과감하게 채택하여 공익과 관련이 없는 사건이나 범죄보도 기사에서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면 인권침해는 거의 없어질 것이다.

사사로운 사건이나 범죄행위에 대해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들과 주변인물의 이름을 밝히는 일, 사사로운 집안사정 등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일들을 보도하는 행위는 공익에 아무런 도움이 안되며 오직 상업주의적 선정주의에 집착한 결과라고 하겠다.

(2) 기사내용의 교정을 위해 기사원고가 필수적으로 두세번 거쳐야 하는 교열부의 교열라인에 윤리문제 전문가를 배치하여 인권침해를 비롯, 윤리강령이나 윤리실천 요강,

보도기준 등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내용들을 사전에 점검하도록 전담시킨다면 보도로 인한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신문협회, 방송협회, 편집인협회 등 언론단체들이 회원각사 편집간부들로 구성되는 보도윤리기구를 만들어 중재위원회, 윤리위원회를 비롯, 학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보도내용면에서의 문제점들을 그들 스스로 제정한 윤리강령, 실천요강, 보도기준 등에 비추어 잘못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정결의하여 잘못된 보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결정사항에 대한 실천을 의무화시켜 준수하지 않을 때에는 자율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강제력이 있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

(4) 이해 당사자가 대립관계에 있는 경우, 고소사건, 진정사건, 그리고 기소전 단계의 피의자 등에 대해서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기사화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사화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집필기자의 주관이나 논평 없이 쌍방의 주장이나 입장을 공평·대등하게 다루도록 한다. 또한 경찰이나 검찰수사관이나 수사기록을 통해 취재한 사건 또는 기자가 스스로 인지하여 취재한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리 마감시간에 쫓기더라도 입증자료를 갖춘 다음 기사화하는 보도관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5) 언론인들의 자질향상과 전문화를 위한 연수와 재교육을 언론기관들이 자주적으로 제도화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이다. 언론인들의 연수, 재교육의 제도적인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국언론연구원의 1991년도 조사에서 언론인들의 97.7%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한국언론연구원에서 연수교육을 받은 언론인들의 88.5%가 실무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변하고 있다.

한국신문협회, 방송협회, 편집인협회 등의 언론단체에서는 수습기자로부터 간부언론인에 이르기까지 일정 기간 반복하여 연수교육과정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제도화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식의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 정정보도 청구의 과감한 수용

(1) 언론보도를 함에 있어 타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하지만 일단 오보 등에 의한 침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피해자의 항의, 불만, 반론, 정정 등의 요구를 과감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전담창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2) 피해자의 불만과 정정 또는 반박보도청구를 받았을 때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신속하고도 과감하게 침해보도에 상응하는 정정보도 또는 그 밖의 구제조치를 취한다는 의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3) 초동수사 단계에서 마치 범인인 것처럼 또는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범죄사건이나 그 밖의 사건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확정판결 또는 사건의 최종종결시까지 추적 보도하여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자율규제기구인 신문윤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 활성화하여 자율적인 피해구제의 효율을 높여야 한다.

3. 정정보도평결권으로 언론중재 기능보완

중재신청된 사건은 피신청인인 언론사측이 합의해주지 않으면 불성립으로 처리된다. 이 불성립된 분쟁사건 중에는 언론사측이 잘못을 인정하거나 객관적으로 침해사실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정보도 합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중재신청사건에 대해 담당 중재부가 피신청인에게 정정보도를 명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정정보도평결권의 취지이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수용자들의 목소리가 날이 갈수록 높아가고 있다. 언론보도에 의한 권익침해는 계속 늘어가고 있는데 현재의 기능으로는 그 피해를 제대로 구제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언론인들조차도 그들이 소속된 언론사의 피해자 반론권 보장 정도에 대해 압도적으로 부정적인 응답을 보이고 있음이 그들의 의식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다.

언론중재위원회가 1989년 중재신청인과 전문가 집단인 한국언론학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언론중재위원회가 직권으로 정정보도를 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신청인의 1백%, 전문가 집단의 81.1%가 찬성을 보였다.

또한 정정보도청구권제도가 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기능강화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집단의 응답이 67.9%로 나타났으며 손해배상문제까지도 처리해야 한다는 견해에 신청인의 95.1%, 전문가 집단의 60%가 찬성을 보였다.

한국언론연구원의 1993년도 언론인 의식조사에서는 언론사의 피해자 반론권 보장에 대해 「보장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신문의 경우 64.6%, 방송의 경우 77%로 언론인들 스스로가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반면 보장되고 있다는 응답은 신문이 9.7%, 방송이 5%에 불과했다.

이상의 여러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들은 언론인들까지 포함한 다수의 수용자들이 언론사의 자율규제에 의한 피해구제가 사실상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이러한 상황이 반사적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기대심리를 유발시켜 기능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법원에 전담재판부 설치 필요

피해자의 권익이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법원에 언론보도에 의한 피해구제청구소송만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둘 필요가 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게재를 위해 중재신청을 했으나 언론사와 합의를 보지 못하고 불성립 결정을 받았을 경우 신청인은 법원에 정정보도 청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청구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본안 소송보다는 비교적 가볍게 그리고 빠르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래도 피해자들은 좀 더 신속한 피해회복절차를 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꼭주는 일반 가처분신청사건과 함께 다루는 것보다는 전담재판부를 둘 경우 사건처리는 현재보다 훨씬 빨라질 것이며 피해회복의 효과도 그만큼 높아질 것이다.

5. 손해배상 판결액이 높아져야 한다

다른 분야의 손해배상 인정액에 비해 언론보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소송에서의 법원 판결액이 파격적으로 높아져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법원에서 인정하는 판결액은 피해보상적인 측면에서나 징벌적인 측면에서 볼 때 지나치게 적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피해배상액의 고액인정이 필요한 이유는 첫째, 대중매체라는 영향력 때문에 입게 되는 치명적인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효과와 인권침해라는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징벌적인 효과의 두 가지 측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이며 둘째는 남에게 피해를 주면 금전적인 손해를 본다는 인식을 주면서 고액의 손해배상 부담이 두려워 언론사측이 적극적인 사전예방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기대 효과 때문이다.

V. 맺는말

언론보도에 의한 피해의 구제는 궁극적으로 언론 스스로의 자율적인 규제에 의존해야 하고 언론의 제반 역기능은 조직화된 수용자운동에 의해 감시되고 통제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이성적인 모습이라고 생각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론인들의 자율의식에 일대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며 수용자운동의 조직화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수용자들의 의견을 폭 넓게 수용하고 피해자들의 불만을 적극적으로 성의있게 해소시켜주는 언론인들의 노력과 자세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야만 한다. 보도에 의한 피해자가 늘어가고만 있는데 언론이 이에 대한 예방이나 피해회복에 소극적이거나 외면한다면 언론의 자율규제능력은 수용자들로부터 의심을 받게 되고 신뢰도는 떨어지게 될 것이며 마침내는 언론의 자율규제에 기대를 걸지 않게 될 것이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든가 효율적 피해구제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수용자들의 목소리가 전에 없이 강하게 들려오고 있는 최근의 일련의 상황은 어떻게 보면 언론의 자율규제만으로 보도에 의한 피해회복이 어렵다는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4년 전부터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언론보도의 규제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강력하게 대두되었던 영국에 이어 최근에 와서 프랑스와 독일에서까지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 침해를 예사로 저지르는 언론보도의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움직임이 있어 주목을 끈다. 이러한 언론선진국에서의 움직임을 결코 남의 일로만 보아 넘겨서는 안 될 것 같다.

□ 서울대 법대, 일본 동경대 대학원 신문학과수로

□ 부산일보 서울지사 취재부장, 서울신문 부국장 겸 북한부장 외신부장,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총장, 한국언론연구원 원장

□ 현재 언론중재위원회중재위원